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13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박정하 · 김대식 · 김은혜
우재준 · 조은희 · 김형동
백종현 · 김승수 · 진종오
정연욱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 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TV를 통해 시청자에게 공개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상영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광고영화 또는 「방송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예외를 둠으로

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내용정보”를 “방송광고영화의 판단 기준·절차, 내용정보”로 한다.

4. 「방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의규정 및 같은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이하 “방송광고”라 한다)와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편집·제작한 광고영화(이하 “방송광고영화”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영화업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방송광고영화
 2.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영화 및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

류 심사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 ----- ----- ----- ----- ----- ----- -----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방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의규정 및 같은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이하 “방송광고”라 한다)와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편집·제작한 광고영화(이하 “방송광고영화”라 한다)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⑩ -----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
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방송광고영화의 판단 기
준·절차, 내용정보-----

-----.

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
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영
화업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1.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방송광고영화

2.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
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
영화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영화 및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 · 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심사 기준 ·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
다.